

사전감상대상

자용 5511 318

감사장 4/11

부서명 : 92 4
영구 부
조사역 과 장 수석부부장 부 장

전 송 철

금융기획과
행원 4471

임원 (법규과) 기획부장

1월 1일 1월 1일 1월 1일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중소기업 무역금융에 대한 제3자명의부동산 담보취득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붙임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 1부, 끝.



한국은행

한국은행 본점 (110710) 11 111

3193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제정(안)

394

사전감사대상

문 서 기 번 호	자용 5511 — 320			이 사 부 총 재 총 재
처리기한	19	보존기간	영구 년	
기 안	19 92 . 4 .			
발 신	19			
조사업 과 장 수석부부장 부 장				
이 부 성 지 영 수				

감사 [Handwritten Signature]

기 안 자	이 승 현	합의 (법규과) 기획부장 [Handwritten Signature]	전결근거	직무권한 분류표 제 1장 제 1절 제 1항 제 3호
소 속	금융기획과			
직 위	행원 전화 4465			
수 신 참 조 세 목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				

시장근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개설자에 대한 건물의 신축 또는 중·개축자금
취급시 부동산 담보취득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
하고자 합니다.

붙임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 1부. 끝.

발 송
업무연속 기 록
① 본 요
타 자

접수
92.4.10
금융과

92.4.11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개정(안)

현행	개정 (안)	비고
제1조 ~ 제4조 (생략) 제4조의 2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 ① 「규정」 제3조의 2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.	제1조 ~ 제4조 (현행과 같음) 제4조의 2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 ① 「규정」 제3조의 2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.	
1~6. (생략) (신설)	1~6. (현행과 같음) 7. 「도·소매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에 대한 시장 신축 또는 중·개축자금 취급과 관련한 당해시장(건물 및 당해대지)의 담보취득	○ 시장개설자에 대한 시장근대화사업관련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임대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시장의 담보취득 허용
② (생략)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~제9조 (현행과 같음)	
제5조~제9조 (신설)	부칙 이 규정은 1992. 4. 16부터 시행한다.	○ 시행일자 명시